

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(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)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”라 함은 8배를 말한다.

제7조의3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.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직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대비 100분의 30 이상 이익배당(직전 회계연도 결산배당 및 직전 회계연도중 지급을 결정한 중간배당을 포함하고,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 채무로 인한 배당은 제외한다.)을 지급한 경우 : 7배. 단, 이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.

<별표 2>의 유동성 부문 계량지표에 “단기조달비중”을 신설하고, “업무용유형자산비율”을 “즉시가용유동성비율”로, “신용카드자산대비 ABS 발행 비율”을 “유동성 대응능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7조의3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제7조의3제1항의 “8배”는 “9배”, 제7조의3제3항제2호의 “7배”는 “8배”를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의3(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)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"라 함은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 다만, 법인 회원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배수를 적용한다.</u></p> <p><u>1.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: 8배.</u></p> <p><u>2.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: 10배</u></p>	<p>제7조의3(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) ① ----- ----- --- <u>"8배"</u>-----.</p> <p><u>< 단서 삭제 ></u></p>
<p>제7조의3(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) ③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신용카드업자가 직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대비 100분의 30 이상 이익배당(직전 회계연도</u></p>	<p>제7조의3(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)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여신전문금융회사</u>----- ----- -----</p>

결산배당 및 직전 회계연도중 지급을 결정한 중간배당을 포함하고,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 채무로 인한 배당은 제외한다.)을 지급한 경우 : 7배. 단, 이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.

 -----.

<별표 2>

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

평가 부문	계량지표	비계량평가항목
자본 적정성	(생략)	(생략)
자산 건전성	(생략)	(생략)
경영관리능력	(생략)	(생략)
수익성	(생략)	(생략)
유동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동성비율 업무용유형자산비율 <신 설> 발행채권의 신용 스프레드^{주)}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동성 변동원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신용카드자산대비 ABS발행 비율^{주)}

주) 신용카드업자에만 적용

<별표 2>

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

평가 부문	계량지표	비계량평가항목
자본 적정성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자산 건전성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경영관리능력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수익성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유동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즉시가용유동성비율 단기조달비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동성 대응능력

--) -----